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04호)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이훈기의원안, 정희용의원안)	3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정희용의원안)	13

I. 개요

1.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7.
- (3) 회 부 일 : 2025. 11.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 59조의2제1항 및 제3항).

2.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0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0.
- (3) 회 부 일 : 2025.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이훈기의원안, 정희용의원안)

현 행	이훈기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 일반공제 -자녀 1명: 연 <u>25만원</u> -자녀 2명: 연 <u>55만원</u> -자녀 3명 이상: 연 <u>55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u> ○ 출생·입양공제 -첫째: 연 <u>30만원</u> -둘째: 연 <u>50만원</u> -셋째 이상: 연 <u>70만원</u>	☐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 ○ (현행과 같음) ○ 일반공제 -자녀 1명: 연 <u>50만원</u> -자녀 2명: 연 <u>110만원</u> -자녀 3명 이상: <u>110만원 + 초과 1명당 80만원</u> ○ 출생·입양공제 -첫째: 연 <u>60만원</u> -둘째: 연 <u>100만원</u> -셋째 이상: 연 <u>140만원</u>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 ○ (현행과 같음) ○ 일반공제 -자녀 1명: 연 <u>35만원</u> -자녀 2명: 연 <u>65만원</u> -자녀 3명 이상: <u>65만원 + 초과 1명당 50만원</u>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이훈기의원안 2025. 11. 7. 제출(의안번호 14004), 정희용의원안 2025. 12. 10. 제출(의안번호 15060)

☐ 2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일반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출산·입양공제”)하는 제도임.

□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반공제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2013년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음.

또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¹⁾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세법개정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8세 이상으로 축소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일반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였으며,

2024년 세법개정에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였음.

한편,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15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6년 세법개정 이후부터 자녀 수 별로 차등하여 확대 지급해 오고 있음.

1)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자녀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2006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2024년 개정
일반 공제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 2명 이내 : 총 50만원	-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좌동) *자녀연령 7세 이상 으로 한정	(좌동) *자녀연령 8세 이상 으로 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35만원+초과 1명당 3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 포함	-1명: 25만원 -2명: 55만원 -2명 초과: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2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공제	-		1명당 30만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²⁾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4년 0.75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바,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공제액 상향은 과세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소득수준, 가치관, 주거형태,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임.

또한,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실질)은 2018년 116.6만원에서 2023년 135.4만원까지 증가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제지원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의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명목비용	115.1	123.8	117.5	130.5	137.7	150.6
실질비용	116.6	124.5	118.0	127.6	127.3	135.4

* 가구당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 실질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감안하여 환산된 값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2024”, 2025.04.

둘째, 일반공제액 확대와 관련하여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당시 상향하고자 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상이한 8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³⁾」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상황의 심화로 인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 및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0만원 상향(월 15만원→25만원), 2명인 경우 20만원 상향(월 35만원→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초과 1명당 10만원 상향(월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2023년 귀속소

3) 신영대의원안(의안번호 180),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1367), 안도걸의원안(의안번호 2058), 김민전의원안(의안번호 2729), 윤호중의원안(의안번호 3508), 정부안(의안번호 3518), 송언석의원안(의안번호 4256), 정태호의원안(의안번호 4967)

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⁴⁾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책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장려금⁵⁾ 지급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⁶⁾,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등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5)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6)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자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또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2025.12.) 법 개정을 통하여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도 확대되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교습 학원 및 체육시

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②										
				소득법 §59-4③										
자녀장려세제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가치세	면세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8,128억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8,787억원, 2026년에는 1조 4,95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연도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5년 (전망)
금액	8,879	8,568	8,534	8,528	8,128	8,787	14,95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예산정책처는 이훈기 의원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6년 1조 8,484억원, 2030년 1조 2,00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6조 7,112억원(연평균 1조 3,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정희용 의원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4,918억원, 2031년 3,217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7,914억원(연평균 3,5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이훈기의원안	△18,484	△13,158	△11,643	△11,822	△12,004	△67,112	△13,422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정희용의원안	△4,918	△3,494	△3,118	△3,167	△3,217	△17,914	△3,5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 원비에 대한 세액공제(정희용의원안)

현 행	정희용의원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예체능 학원비 등 - <신 설>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로서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희용의원안 2025. 12. 10. 제출(의안번호 15060)

☐ 개정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가구로서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체능 학원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최근 2025년 세법개정으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교습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일정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은 공제대상 교육비를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급식비, ③ 초·중·고 교과서대금, ④ 연 50만원 한도의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⑤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연 30만원 한도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⁷⁾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72.1만원⁸⁾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

7)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8)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할 경우, 교육·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잠재적인 출산 희망가구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⁹⁾한 상황에서, 학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 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 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

9)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년대비 7.7% 상승하여,¹⁰⁾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맞벌이가구 비중	45.0	45.9	46.1	48.2	48.0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예체능 학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예체능 분야는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체능 학원이 재능계발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술·체육활동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공교육의 예체능 수업시수 증가를 통한 교육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국가데이터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을 위해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63.9%

10)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3.

를 차지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보육을 위해서 수강한다는 비중이 18.1%로 일반교과의 사교육(12.8%)보다 보육 목적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4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 보충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	보육	친구를 사귀기 위해	기타
초등학교	3.3	5.0	65.1	18.1	7.5	0.9
중학교	15.8	3.9	72.3	-	6.5	1.6
고등학교	51.1	6.1	39.6	-	2.2	0.9
전체	9.3	5.0	63.9	13.9	6.9	1.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5. 3.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4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 보충	보육	기타
초등학교	6.5	3.0	24.1	50.3	12.8	3.4
중학교	15.8	3.7	25.8	53.0	-	1.7
고등학교	30.9	3.4	17.3	47.8	-	0.6
전체	14.4	3.3	23.1	50.5	6.5	2.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5. 3.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¹¹⁾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60%	1.0	2.4	16.7	0.4	28.4	48.9
60%~80%	1.3	3.6	18.0	0.3	31.8	55.0
80%~100%	2.3	3.1	21.1	0.2	34.1	60.7
100%~120%	1.9	4.4	25.1	0.2	36.0	67.9
120%~140%	2.4	6.0	27.8	0.9	37.1	74.2
140%~160%	2.1	5.3	32.0	1.3	38.9	79.7
160%~	2.4	8.8	41.0	4.9	45.4	102.5

*가구소득은 2024년 2/4분기 가구(1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469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최근(2025년) 세법 개정으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
등학생을 위한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11)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해당 세액공제 대상을 전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까지로 넓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202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교습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전술한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예체능 사교육의 보육 기능이 사라지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비중이 5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세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고등학생 이하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취지이나, 개정문에는 예능 교습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한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학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666억원 등 5년간 총 2,487억원(연평균 6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안 제59조의4)	-	△666	△640	△607	△574	△2,487	△6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